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

상속 시 공제되는 채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글 | 이호 화인경영회계법인 회계사



상 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 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크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가공 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 미지급 이자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보증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채무로서 공제된다.

3) 연대 채무

피상속인이 연대 채무자인 경우에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 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가 돼 피상속인이 변제 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 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5)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 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해야 한다.

채무 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 계약서를 작성해 채무 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 채무 계약서를 제출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삼가야 한다. ☺